

●환경부고시 제2023-253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2제2호에 따라 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02일

환경부장관

**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**

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 수량 기준표 중 연번 “1260”란 다음에 “1261”란부터 “1263”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연번	고유번호	화학물질명	CAS번호	하위 규정수량 (톤)	상위 규정수량 (톤)
1261	2023-1-1116	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[Cobalt manganese nickel oxide]	37348-84-8	20	400
1262	2023-1-1117	실리카겔과 산화 크로뮴, 에톡시디에틸알루미늄의 반응 생성물[Silica gel reaction products with chromium oxide (CrO3) and ethoxydiethylaluminum]	932384-12-8	20	500
1263	2023-1-1118	1 - 브 로 모 - 2 - 메 틸 벤 젠 [1-Bromo-2-methylbenzene]	95-46-5	20	400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